

경비업무적 관점에서의 송례문화재사고 분석과 대책

The Analysis on the Soongrae-Mun fire and it's improvement measure

정태황* · 이충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사고방지 대책 |
| II.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논리 | V. 결론 |
| III. 화재사고의 문제점 분석 | |

<요 약>

송례문 화재사고는 우리나라의 평시 문화재에 대한 안전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없이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송례문화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민간경비업무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경비업무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비업무적인 관점에서 화재사고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학자인 하인리히(H. W. Heinrich)는 그가 주장한 연쇄반응이론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태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관리·통제적 원인과 같은 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재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경비관련 법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법규 제정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업무의 영역과 능력, 책임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이를 위한 재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민간경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경비회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 송례문, 화재사고, 안전의식, 민간경비, 소방

* 한서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겸임교수

I. 서 론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승례문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2008년 1월 4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¹⁾ 발생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때에 또다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경향신문, 2008.1.7)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화재사고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때 발생하여 큰 손실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업무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평상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홀대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책임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다.

승례문 화재사고의 책임공방 가운데에는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서울시 중구청,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했던 소방기관 그리고 경비업무를 제공했던 민간경비회사가 있다. 경비회사는 승례문의 관리기관인 서울시 중구청과 경비계약에 의해 무인경비업무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무인경비업무에 대한 문제가 법적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면서 일반인들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무인경비업무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민간경비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인경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비회사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다면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에 맞는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승례문 화재사고의 문제점을 찾거나 국가문화재인 승례문의 관리선 상에 있었던 여러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업무의 환경에서부터 각 기관과의 업무분장과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 그리고 각 기관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문제

1) 2008년 1월 7일 10시 49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냉동 창고 지하 1층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층 건물이 전소되었다. 작업장 내부 벽면과 천정 모두가 10Cm 두께의 우레탄폼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져갔고 유독가스도 더 많이 발생했으며,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 수사결과 이 사고는 행정기관과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작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고였다(연합뉴스, 2008.1.26).

점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무게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중 일부는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승례문화재사고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민간경비업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민간경비의 특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경비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무인경비업무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한 연구자료나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자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연구자들이 오랜 실무경험에서 얻은 전문성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사건을 보도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경비업무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연구자가 2003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요 동산문화재에 대한 방법시스템 현장조사·분석에 참여했던 경험이 본 논문의 현실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²⁾

II. 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논리

1. 사고의 원인 분석 이론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직접원인은 시간적으로 사고에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물적원인과 인적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간접원인은 직접원인과 관계하여 사고에 이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간접적인 원인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양성환 외, 2002).

사고는 일종의 연쇄관계를 거쳐 진행되며, 어느 하나의 원인을 제거하여 연쇄관계를 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방지를 위해 사고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쇄반응이론은 사고발생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규명한 안전학자인 하인리히(H. W. Heinrich)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프랭크 버드(Frank E. Bird Jr.)가 하인리히의 이론을 수정하여 새로운 연쇄반응이론을 주장하였다.

2) 본 연구자는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담당 공무원과 2개조로 나누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방법시스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방법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시스템 설치의 필요성과 적절한 시스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하인리히가 사고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주장한 연쇄반응이론은 도미노 이론으로서, 사고는 사고원인의 연쇄반응의 결과로서 초래되며 대부분의 사고는 불안정한 행동 또는 불안정한 상태에 기인된다고 주장한다. 하인리히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태의 중추적 요인의 배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허성관, 1999).

불안정한 행동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교육적 원인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불안정한 상태란 주로 물리적인 요소로서 환경 및 조건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버드는 하인리히 이론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운 연쇄반응이론을 제시하였다. 버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기본징후에 불과하므로 관리기능인 계획, 조직, 통제 등의 기능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병석, 2001). 즉 단순히 문제의 징후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원이 되는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논리로 하고 있다.

하인리히의 연쇄반응이론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면 연쇄고리가 단절되어 예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사고의 직접원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물었다. 그러나 버드는 직접원인을 관리의 부재에서 초래했던 징후로 보았으며 직접원인은 기본원인에 불과하므로 기본원인의 발생을 제어하는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논리라 할 수 있다.

2. 사고의 원인과 대책

사고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승레문 화재사고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 후 사고처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사고는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원인 가운데 기술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고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세 가지 원인에 대한 방지책으로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규제적 대책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병석, 2001). 승레문 화재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과 같은 관리·통제적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술적 대책은 공학적 대책이라고 말하며, 잠재하는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위험방지에 대한 대책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 대책은 안전에 대한 좋은 태도와 습관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며, 관리적 대책은 규정, 감독체제, 동기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승례문화재사고는 방화자의 불안정한 행동과 화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승례문의 상황이 사고에 가장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한 유전적인 요인, 개인적인 결함, 사회 환경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화행위와 관계하는 승례문의 안전관리, 경비 및 소방시스템, 관련 법규 등과 같은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화재사고의 문제점 분석

1. 관리·통제적 문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5분 경 방화에 의해 승례문이 전소되었다. 승례문화재사고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³⁾, 이에 비해 2008년 1월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소방시설의 운영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조선일보, 2008.1.10) 차이가 있지만 두 화재사고 모두 사람의 범행과 실수를 유발한 제도적 문제와 시설관리, 안전의식, 소방시설, 경비시스템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승례문 개방을 결정하기 이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개방 이후에도 승례문 보호를 위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리인 3명이 출퇴근하는 방법으로 경비업무가 진행되면서 야간에 경비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화재의 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방화자의 개인적 문제가 승례문 화재사고에 직접적으로 작용했지만 방화자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승례문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허술한 관리문제가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방화자가 종묘와 같이 비교적 경비시스템이 잘된 곳 대신 경비가 허술하고 접근이 쉬운 승례문을 방화대상으로 선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중요한 문화재의 관리체계에 있어 문화재청과 지자체인 서울시 중구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었다는 것도 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국보인 승례문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이 2억원도 안된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중앙일보, 2008.2.15) 서울시가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과 비교해볼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재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가 행정책임자

3) 승례문 화재사고는 남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토지보상에 불만을 가진 채종기(70세)가 승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리터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ライタ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에 의해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뉴스엔뉴스, 2008.2.14).

의 업적관리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정책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에 대한 소방업무나 경비업무를 규정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소방시설 설치와 경비실시 여부, 어떤 형태의 경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순전히 시설주(시설관리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사고 방지업무에 소홀하였다.

지난 2002년 소방방재청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적용하는 소방법령 개정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였으나 문화재시설의 원형훼손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이 동의하지 않았다”(뉴스엔뉴스, 2008.2.12)는 사실은 문화재 관리자의 안전관리 인식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소방시설 및 전문성 부족

화재진압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사이의 엇갈린 의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최초 서까래에서 연기가 났던 화재발생 후 10분 이내 현장에 소방당국이 출동해 있었지만 화재진화를 위해 승레문의 기와를 들어내야 할지, 고가 사다리를 써서 대원들을 투입해야 할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동안 승레문이 전소됐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08.2.11).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기와-흙(석회두께 1~3m)-적심(소나무)-개판(널판지)-서까래로 건축된 건물로 내·외부에서 고압 집중방수를 해도 적심까지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화재진압이 지연되었고, 경사기와 구조 및 결빙으로 기와 해체작업이 불가능해 상부에서 진압이 곤란했으며, 고가차의 활동 장소의 불안정으로 인한 초기 활용이 지연되었다”며, 특히 “중요 국보 문화재인 점을 감안 문화재청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뉴스엔뉴스, 2008.2.11).

소방방재청은 ‘승레문 화재관련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 보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자동 통보 시스템 미구축, 화재시 문화재 반출 등 매뉴얼 관련 공유 미흡” 등의 문제점을 열거했고, “설계도 등이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신속대처가 곤란했다”고 주장했다(뉴스엔뉴스, 2008.2.11).

결국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방업무가 문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운 것이다. 사고 후 대책을 논하기도 전에 관련 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화재진압업무에 대한 세부 매뉴얼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인 업무수행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3. 민간경비의 업무영역과 책임 한계

1) 경비회사의 책임 문제

범죄예방은 국가기관인 경찰의 몫이지만 경찰이 증가하는 방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경비회사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민간경비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와 서비스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이윤근, 1999).

경비회사가 승례문 경비업무의 일부를 담당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경비회사가 화재사고의 책임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민간경비업무는 경비회사와 시설주(시설관리자)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승례문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서울시 중구청이다. 경비회사 K사가 승례문의 관리자인 서울시 중구청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야간에 승례문의 무인경비업무를 담당했었다. 경비회사와 시설주가 체결한 계약서에 경비업무와 서비스 범위, 용역비, 경비회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 범위 등이 명시된다.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경비에 의한 경비업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데, 승례문의 경우에도 시설 관리자인 서울시 중구청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경비회사의 과실에 의해 경비대상시설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비회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손실에 대한 배상에 관한 것으로, 배상은 경비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사고발생 후 경비회사의 법적 책임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비회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비회사가 승례문 화재사고에 중요한 과실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인들에게는 이상하지 않게 보였지만 민간경비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비회사가 경비업무상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경비업법의 위반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로 경비업무 운영상의 문제로 한정된다.

결과적으로 경비회사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수사과정에서 공개된 내용 중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잘못된 관행은 일반인에게 민간경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으며, 마치 경비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경비업법이 아닌 다른 법규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과 같이 경비업 외의 잘못으로 인하여 경비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민간경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경비회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2) 무인경비업무의 책임 한계

이번 화재사고로 언급된 무인경비업무는 경비회사가 제공하는 경비업무 중 하나로, 경비업법 2조에 기계경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무인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센서를 설치하고 이상신호 발생 시 경비원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이상상황에 대응토록 하는 업무이다.

무인경비업무는 경비원이 경비대상시설까지 출동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경비원이 경비대상시설에 상주하는 시설경비업무(인력경비업무)에 비해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정태황, 2002). 그러나 무인경비업무의 용역비는 시설경비업무의 용역비에 비해 아주 저렴하며, 경비회사는 많은 경비대상을 상대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무인경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회사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무인경비서비스의 범위는 어떤 종류의 센서를 설치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며, 설치되는 센서에 따라 용역비가 결정된다. 센서는 대표적으로 무단침입을 감지하는 방범 센서와 화재 또는 가스누출을 감지하는 방재 센서가 있는데, 승례문에는 무단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해 적외선센서가 설치되었으며, 화재감지기는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경비회사는 방화자가 승례문으로 침입하는 것을 적외선센서에 의해 감지하여 현장에 경비원을 출동시켰다. 경비원은 화재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출동 후 화재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기관에 의해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경비회사가 하기로 명시되어 있던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이번 화재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출동시간에 대한 것으로, 방화자의 침입행위를 감지한 후 경비회사의 출동요원은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9분이라는 출동시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무인경비업무의 출동과 관련하여 경비업법에 경비회사는 2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출동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동체제란 경비회사가 관리하는 경비대상에 대해 적절히 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과 기동장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출동강제시간을 말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25분 내에 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더라도 경비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경비회사가 배상책임이 있지만 25분 이후에 출동했더라도 손실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 것으로 25분이란 시간은 특별히 의미 없는 시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25분이라는 시간은 경비회사의 출동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기보다 경비대상

시설에 대한 원만한 출동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손실배상과 연관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9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비회사의 업무 영역과 처리 능력에 관한 것으로,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연락업무 정도가 될 것이다.

경비원은 특별한 법적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이상상황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방화자가 승례문으로 침입했을 때 작동한 경보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민간경비원이 화재상황을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소방업무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화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비원이 화재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처리과정에 경비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화재로 발생한 책임과 배상에 대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경비계약과 손해 배상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민간경비업무는 시설주(시설관리자)와의 경비계약에 의해 실행되며, 무인경비업무의 경우 경비대상시설에 설치되는 센서의 종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용역비, 배상에 관한 부분이 결정되고 이러한 사항이 경비계약서에 명시된다.

경비회사 K사는 승례문의 무단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센서를 6조 설치하고 침입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으로 침입상황에 대응하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계약서⁴⁾에는 ‘이상신호 수신되면 출동요원을 출동시켜 사태를 확인한다’는 무인경비업무 범위에서부터 ‘25분 안에 출동하면 된다’는 내용, ‘경비회사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3천만원 한도내에서의 배상책임’,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경비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25분 안에 출동하면 된다는 내용은 출동시간을 이유로 경비회사의 책임을 일부 면하려는 일방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3천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침입사건에 의해 훼손된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액으로 경비회사의 서비스범위에 따른 책임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경비회사 K사와 서울시 중구청 사이에 체결된 무인경비계약서는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서비스제공범위(무인경비 설치공사, 무인방범서비스, 무인경비 시설 유지보수), 방범서비스 제공절차(이상신호 수신시 즉시출동, 경찰연락 등), 서비스이용료(무상서비스), 경비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배상, 배상한도액(3천만원), 전기누전 방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가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지만, 지자체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용역비에 따라 경비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재 가치에 맞는 경비서비스 제공과 배상액을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내일신문, 2008.2.14). 승례문 손실에 대해 3천만원이라는 배상한도는 문화재의 가치가 전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화재로 소실된 승례문의 화재 보험금은 9천50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승례문이 든 보험은 서울시가 흥인지문(동대문) 등 다른 시유재산과 함께 한국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한 화재보험 1건에 불과하며, 문화재청이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승례문에 대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동아일보, 2008.02.15).

서울시가 가입한 승례문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건물 m²당 278원씩 연간 8만3천원에 불과해, 화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m²당 31만8천원씩 총 9천508만원으로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는 지적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 성격상 승례문의 문화재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건축물로서의 보험료와 보험금만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4) 경비회사의 잦은 변경

경비회사 K사가 용역비를 무료로 승례문 무인경비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경비회사가 국보인 승례문을 경비한다는 상징성이 주는 무형의 가치와 이로 인한 마케팅효과를 고려해 볼 때 경비서비스에 대한 용역비를 무료라고 보기 어렵다.

경비용역회사가 S사에서 K사로 변경되기 전에 C사에서 S사로 변경된 적이 있다(조선일보, 2008.2.16). 이러한 현상은 국가 주요 문화재인 승례문 경비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경비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경비회사 사이에 과당경쟁을 보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경비업무의 허점을 보였던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규가 없으므로 경비회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K사는 ‘문화재 지킴이’ 운동의 하나로 문화재청과 ‘문화지킴이 협약’⁵⁾을 맺은 것을 계기로 S사가 매달 30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무인경비해오던 승례문을 2월 1일부터 무료로 경비했지만 승례문경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상업성에 치우쳐 문화재 경비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5) 2007년 5월 8일 문화재청과 경비회사 K사와 1사 문화지킴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시 중구청과는 2007년 12월 31일 문화재지킴이 협정 후 2008년2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하였다.

3. 부적절한 경비계획

승례문 경비를 위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간에는 서울시 중구청 직원이 시설관리 차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했고 관리자가 퇴근한 후인 20:00시부터 경비회사가 제공하는 무인경비업무에 의존하였다.

일반적으로 경비대상시설에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경비계획에 맞게 경비시스템을 설계하게 되는데, 승례문은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에 비해 인력과 경비시스템 운용 등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못했다.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경비업무를 위하여 경비대상시설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경비계획과 함께 적절한 경비방법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경비업무를 선택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였다. CCTV 카메라 4대가 정문과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화자가 침입할 때 적외선 센서의 감지에 의해 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다(조선일보, 2008.2.16). 이는 감시구역 설정을 위한 CCTV 카메라의 위치가 부적절했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된 CCTV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비계획은 경비회사가 시설주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경비회사의 전문성과 업무절차가 경비계획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효과적인 경비계획이 되지 못하였다는 데는 일부 용역비 문제 때문도 있지만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의식적인 부분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비회사는 경비방법과 적절한 경비시스템에 대해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비용문제가 결부됨으로써 경비업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시설주의 몫이다. 따라서 시설주의 경비업무에 대한 선택권이 법적으로 어떻게 관계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IV. 사고방지 대책

1. 관리적 대책

1) 관련 법규 제정

화재사고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화재, 2006년 5

월 수원 화성 서장대 화재 등 화재 발생 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승례문 화고사고 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별도의 문화재 소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이번에는 실행되기를 희망해 본다(국민일보, 2008.02.11).

안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소방과 경비업무는 공히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 소방법 제정 시 경비관련 법규 제정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법규에는 경비대상이 되는 중요 문화재의 선정 기준과 근무자 배치 및 시스템 설치·운용 등의 경비방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재 안전에 대한 법규나 지침을 마련하여 소방업무와 경비업무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현행 소방법상 승례문은 소화기 설치대상으로 8대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문화재 소방법규에 의한 강제성이 없어 소방시설 구비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비업무에 관해서도 법적 강제사항이 없으므로 경비업무가 소극적이었던 여지는 충분하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88조에는 지정문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의무는 문화재청, 시·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다. 지난 2006년 12월 문화재청 연구보고서가 “대부분의 문화재 및 사찰의 경우 소규모로 시행기관인 문화재청의 업무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업무지침 보다 관련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항, 항만 등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경비업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비·보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비방법과 경비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 등을 포함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비업무를 활성화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비업법에는 경비업무에 화재방지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간경비원이 화재방지 능력을 고려할 때 순찰을 통한 발견과 소방기관 신고, 그리고 초동 진화 정도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를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리적 대책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기능과 화재진압 기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예방기능을 하게 되는 경비업무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업무가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을 법규 탓으로 이야기 하지만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은 법규와 관계없이 사고에 대비하는 인식에 기초하여 실행할 수 있다.

화재사고 후 소방방재청은 ‘승례문 화재관련 문화재 화재예방대책 보고’에서 화재감지기와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목조 문화재시설에 대한 방화대책 강화,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기관으로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뷰스앤뉴스 08.2.11). 일본의 경우 1989년 화재발생시 직접 소방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하고 있다.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으나 문화재 훼손 우려로 자동소화설비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건설단계에서 설치하는 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다.

경비업무는 소방업무의 체계화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으로, 현장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는 현재의 구조를 단일화 시켜야 하며, 시설 관리기관 뿐 아니라 소방기관에서도 문화재 설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소방매뉴얼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소방 또는 경비시스템은 사람에 의해 관리·운용되어 사람을 보조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경비시스템 설치의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목재로 구성된 문화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시스템 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승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흥인지문(동대문), 보신각 등 중요 문화재에 24시간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8.4.14).

2. 안전관리와 경비계획의 전문화

현재 우리나라는 경비계획에서부터 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보수 등의 모든 업무가 경비회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의해 실행되고 있어 전문성이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문화재를 포함하여 특정 경비대상시설에 대해 경비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단계에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전반적인 과정을 구분하여 업무영역을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경비방법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경비업무를 원한다면 Local security system 이라 불리는 현장경비시스템 즉, 경비대상시설에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CCTV시스템이나 침입경보시스템과 같은 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형태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만약 현장경비시스템의 운영이 어려워 경비기기에 의존해야 한다면 원격지에서 현장의 영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간기관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연구자가 2003년 12월 문화재청과 같이 전국 동산문화재 방범시스템 실태를 분석했을 당시, 문화재 관리기관으로서 문화재를 도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볼 수 있었으나 효과적인 경비시스템 구축과 거리가 먼 예산 맞추기식 시스템 선정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상당한 곳에서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설치된 시스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관하는 시설과 사찰, 목재건물로 된 대부분의 문화재가 화재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시스템이 없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운용상 문제로 장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는데, 현재 까지 그러한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합리적 배상 체제

안전관리문제를 논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배상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은 재무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험관리 기법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유재환 외, 1998).

문화재 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재에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따라 보험문제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문화재에 발생한 손실에 따라 예상되는 복구비용 산정을 기준으로 책임보험형식으로 보험가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민간보험회사가 배상기준을 결정할 때 대상 문화재에 대한 경비업무 또는 소방업무 실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문화재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보험회사가 적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4. 경비회사의 공익성 확보

경비회사는 '방범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면서 제한적이지만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범죄예방은 경비업무의 공익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경비회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비업무가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경비회사 스스로 내세우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비회사가 이러한 공익성에 충실하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경비업무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경비회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자신한다면 고객과 계약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장점뿐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고객의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발생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배상문제를 논의할 때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회사가 전문성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비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경비원 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성에 근거하여 영업에서부터 전문적인 경비 계획, 경비시스템의 기술개발 등이 동일하게 중요시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훈련은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검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V. 결 론

지금까지 많은 화재사고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당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달리 근본대책 없이 사후 처리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방기능과 조치기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인적·물적 원인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의 이전단계인 간접적인 원인 단계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다. 즉 사고의 원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방화자의 개인적 결함으로 인한 방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안전관리와 체계적인 경비계획, 소방시스템 설치·운영 등과 같은 관리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승례문 화재사고는 우리나라의 대형 화재사고에 따른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안전의식 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홍보와 교육 기능도 중요하지만 법규를 통한 안전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 업무와 경비업무를 법제화하여 업무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법제화 하는 데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리자 배치와 시스템 설치 운영 등 현실적인 경비계획과 소방계획과 같은 기술적인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는 법규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실행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민간경비의 역사는 짧지만 이에 비해 성장속도는 엄청나다. 갈수록 민간경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라는 기능을 통해 경찰의 빈 공간을 매우면서 일반인에게 친근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경비의 질적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비회사는 경비업무에 관한 고객에게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특히 경비업무제공을 위한 경비계약체결 시 고객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비회사 스스로가 고객인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경비방법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민간경비업무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객의 역할도 아울러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함께 사고발생 시의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경비회사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메뉴얼 뿐 아니라 경비계획과 민경경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경비업무에서 언급되고 있는 화재방지업무에 대한 업무의 구분이 필요하다. 소방은 전문적인 부분이 요구되는데 민간경비원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소방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경비업법의 내용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면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었던 무인경비업무가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무인경비에 대한 인식부족은 일반인 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 발생 후 책임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번 사고는 처음에 제기되었던 경비회사의 법적책임문제와 달리 수사결과 경비회사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경비회사 스스로가 주장했던 공익성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그동안 우려되었던 불신을 개선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비회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적, 기술적 향상과 효과적인 범죄예방 기능을 위한 재투자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비업법(개정 2008.2.29, 법률 8872호).
- 김두현·김정현(2002).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병석(2001). 『신산업안전관리』. 서울: 형설출판사.
- 승레문 화재관련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 보고(2008). 서울: 소방방재청.
- 양성환·박범·갈원모·최정화(2005). 『안전관리』. 서울: 형설출판사.
- 유재환·정재희·김윤선·장성록·이원근·김종배(1998). 『안전관리』. 서울: 동화기술교역.
- 이윤근(1999).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서울: 엑스퍼트.
- 정태황(2002). 『기계경비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정태황(2003). “기계경비시스템의 변화와 시장전망”. 『경호경비연구』 6.
- 허성관(1999). 『산업안전관리론』. 서울: 보성각.
- www.kyunghyang.com
- www.viewsnnews.com
- www.joins.com
- www.chosun.com
- www.donga.com
- www.kukinews.com
- www.naeil.com
- www.nema.go.kr
- www.yonhapnews.co.kr

Abstract

The Analysis on the Soongrae-Mun fire and it's improvement measure

Chung, Tae-Hwang · Lee, Choong-Soo

Soongrae-Mun Fire shows safety problem in Korea intimately. People have pressed for the responsibility of persons in charge and have asked for improvement measure whenever Fire accident occur, but similar accidents occur again without any improvement.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 on the base of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Soongrae-Mun fire to prevent similar accident, also to help private security company do effective security job. This research is approached from a security point of view.

A lot of accidents occur by direct cause such as people's unsafe action and unsafe condition. but it is very difficult to remove the facts of direct cause, so the facts of indirect cause should be analyzed together.

Drew-up of security 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included when the establishment of fire fighting related legislation is examined, also technical improvement should be examined with legislation.

security company should be concerned about securing of expertise and reinvestment for the improvement of expertise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ivate security such as job boundary, capability and responsibility. Also private security company should try to service for public benefit and to examine practical compensation for loss occurred by mistake of security company.

Key Words : SoongRae-Mun, Cause, Accident, Fire fighting, Private security